

# 신용정보 활용체제 변경 (2024.12.02)

## 05.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(최신화)

변경전	변경후
<p>(바)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권</p> <p>① 신용정보주체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신용관리회사, 개인신용평가회사,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, 본인 등에게 전송하거나, 전송요구를 철회하여 줄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</p>	<p>(바)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권</p> <p>① 신용정보주체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신용관리회사, 개인신용평가회사,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, 본인 등에게 전송하거나, 전송요구를 철회하여 줄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</p> <p>(사)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권</p> <p>①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 설정 및 유지등을 위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② 신용정보주체는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자동화평가에 이용된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최신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기초 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자동화평가 결과의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</p>